

의안 번호	2524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6.(화)

2. 제안이유

-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복지교육국 분장사무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분장사무 조정(안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)
 - 1) 복지교육국(안 제8조제2항)
 - 복지정책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
 - 노인정책, 노인지원, 통합돌봄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 사항

(1) 제정배경

-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복지교육국 분장사무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(2) 내용검토

가.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(안 제8조)

○ 제2항의 내용중 1호 변경

(현행) 복지정책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
(개정) 복지정책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

○ 제2항의 내용중 2호 변경

(현행) 노인정책, 노인지원, 장애인복지,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

(개정) 노인정책, 노인지원, 통합돌봄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

6. 검토 사항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복지교육국 분장 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조례 제8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의 내용 중 1호 ‘통합조사관리’를 ‘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’으로 변경하고, 2호 ‘장애인복지, 생활보장’을 ‘통합돌봄, 장애인복지’로 변경하는 것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